

부산지방법원 2018. 5. 24 선고 2017가단22298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재판경과

부산지방법원 2018. 10. 17 선고 2018나50031 판결

부산지방법원 2018. 5. 24 선고 2017가단22298 판결

전문

원 고 A

피 고 부산광역시 중구

소송대리인 B

변론 종결 2018. 5. 3

판결 선고 2018. 5. 24

주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 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, 부산 중구 C 대 87.8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 중 별지 도면 표시 가,

나,라,다,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(이하 '계쟁 토지'라 한다) 지상 방법초소 16.6㎡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를 철거하고,위 토지 16.6㎡를 인도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(1). 원고는 2015. 12. 2.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81651호로 피고와 D을 상대로, 이 사건 토지는 자신 소유인데도 불구하고(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의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관하여 소유권대지권을 가지고 있다),피고는 계쟁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건축하였고, D은 E청년회의 전 회장으로로서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·사용하고 있으므로,피고 및 D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계쟁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제기하였다.(2) , 위 법원은 2016. 4. 29. 원고의 피고 및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(이하 '이 사건 선행소송'이라 한다)하였고,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원고가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,항소가 각하되었고(부산지방법원2016나44193호),원고의 상고도 기각되어(대법원 2016다255279호) 위 판결이 확정되었

다.[인정근거] 을 제5, 6, 7호증의 각 기재,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토지는 자신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계쟁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무단으로 건축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, 계쟁 토지를 인도하여야한다.

나. 판단

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, 이러한 기판력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

무관하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.

원고가 이 사건의 청구원인과 동일하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계쟁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, 위 선행소송과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후소로 제기된 이 사건에서 위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.

3.결 론

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임해지